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

2017. 6.

감 사 원

문제점

<주요 감사결과 요약>

- 문체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산하 기관에 지시하고, 배제 지시 이행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등을 차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독립성을 훼손
- 문체부는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차은택이 추천한 업체의 견적만 받아 해당 업체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대행사로 부당 선정(34억 원)하였고, 과다 산정된 이윤을 그대로 인정하여 업체에 2억여 원 과다 지급
- 문체부는 2015년 '글로벌 광고인재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보조금 5억 원)하면서 공모도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였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2016년에 재차 동일한 업체를 선정(보조금 5억 원)
- 기재부는 편익을 과다 산정,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한(B/C 1.09) 문화창조아카데미 기본계획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B/C 0.71)되었고, 문화창조아카데미는 교육생 선발 후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교육생 참여가 극히 부진하여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운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체부는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없이 방치
- 문체부는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위배하여 예측 가능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사업, 신규사업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의 보조금을 정산·확정하지 않아 집행잔액을 민간보조사업자 계좌에 방치

2-(1) 특정 문화예술인 · 단체 부당 지원배제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과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라 한다), 한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이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와 제20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고, 한문연은 같은 법 제38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상호 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예기금을 재원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99]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3조 등에 따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이라 한다)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며,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등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세종도서사업[100] 등을 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 19.~3. 10.) 중 문예위 등 문체부 산하기관이 문화예술인·단체 등 지원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문체부의 지도·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예술, 영화, 출판 분야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아래 “특정 문화예술계 부당 지원배제 경위”와 같이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문체부에 지시

99)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자 민간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국립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100) 매년 출판산업 진흥과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학술·문학·교양 등 3개 분야별로 출판물을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한 후 선정된 도서별로 10백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

하여 문예위 등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부당하게 지원배제하도록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문화예술계 부당 지원배제 경위

- ▸ 2013년 9~11월 문화예술계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슈화되자 문화체육비서관실은 2013년 말부터 문체부에 이념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 • 2013년과 2014년에 문체부(◐관실) 소관 우수도서 선정에서 이념편향적 작품 선정이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비서관실은 2014년 초부터 문체부에 각종 심사위원의 책임성 및 자격심사를 요구하며
  - • 2014년 초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진보성향 작품·단체 등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체부(◈관실)에 문예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사업 선정위원 및 지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고 그중 특정 인사·단체를 선정·배제하도록 지시
- ▸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 'ㅇ' 상영이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비서관실은 2015년 1월 문체부(○관실)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축소를 지시하고 문체부는 이를 영진위에 지시하여 이행시킴
- ▸ 2014년 6월부터 문체부(◎실)는 예술·영화·출판 등 각 분야 담당부서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지시 실적 등을 이행관리하고 이를 문화체육비서관실에 보고하기 위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구성·운영

2. 예술 관련 문예기금 지원사업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1) 문예위 문예기금 지원사업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다양성[101]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 "문화 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 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

그리고 문체부는「정부조직법」제35조,「문화예술진흥법」제23조, 제24조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4조 및「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예위 위원과 위원장 등을 위촉하고, 문예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는 것 등을 통해 문예위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문화예술진흥법」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문예위 규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문예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예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위원장 포함)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국가공무원법」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102]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예위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하거나 문예위 공모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지원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고 국민의 문화권 및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이와 같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예위는 심의위원 후보자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예위 공모사업 등에서 선정·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으로 문예위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문예위 문예기금 지원대상 등 부당 배제

① 책임심의위원 선정 관련

그런데 문체부(◈관실)는 2014년 3월 문화체육비서관실에 2014년도 문예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송부한 후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105명 중 IY 등 19명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문체부(◈관실)는 2014년 3월 문예위(사무처)에 2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103] 위 19명을 문학·시각·연극 등 분야별 책임심의위원에 선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103) 문예위는 정권이 불편해 하는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추정함

이에 대하여 문예위(사무처)는 2014. 3. 28. 문예위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2015. 8. 5.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으로 개정하기 전의 것, 문예위 규정) 등[104]과 달리 문체부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문예위 위원장과 전체회의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문학 분야 IY 등 위 19명을 2014년도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별표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부당 선정배제 명세"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명(책임심의위원 19명, 심의위원[105] 47명)을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문예위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배제하였다.

②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관련

한편 ◈관 BC와 ◈과장 AG는 문체부(◈관실)가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원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아 지원배제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비서관실과 문체부(◈관실) 간 지원배제에 대한 전담 연락 창구역할을 하는 ◈관실 ◈과 CN이 2015년 9월경 ◆실 선임행정관 U에게 문예위 공모사업 등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후 U로부터 문예기금 지원배제 명단을 통보받았다.

그러고 나서 문체부 ◈과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년 9월경 문예위의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96개 단체 중

104)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5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위원장은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105) 문예위는 2015년 8월 기존 책임심의위원 제도를 심의위원 풀 제도로 변경함

사단법인 ▼▼ 등 22개의 특정 문화예술단체명을 문예위(사무처)에 유선으로 알려주면서 지원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예위(사무처)는 위원장 CO가 문체부(◈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실제 지원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아 지원배제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0. 27. 심의를 주도할 수 있는 친정부 성향의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고 지원배제 명단을 공유한 후 심의과정에서 배제대상자가 지원후보로 거론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 부실 등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의 신청자인 사단법인 ▼▼ 등 22개 단체가 지원배제되도록 하였다.

③ 공연예술스태프 지원사업 관련

이뿐만 아니라 문체부 ⛒과는 2016년 5월 말경 문화체육비서관실에 문예위 공모사업 등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후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문예기금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았다.

그러고 나서 문체부 ⛒과는2016년 6월 초순경 ▤실장[106] AC, ◈과장 AU가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원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아 지원배제

106) ▤실은 ◈관실, ▥관실, ⧅실 등 3개로 운영됨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문예위의 “공연예술스태프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316개 단체 중 사단법인 ▼▼ 등 36개 문화예술단체명을 문예위(사무처)에 유선으로 알려주면서 지원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예위(사무처)는 위원장 CO에게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CO가 부당한 지원배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자 2016년 6월 중순경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심의 과정에 간사로 참석하여 선정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등 심의위원들에게 지원배제 지시 내용 언급 및 이행의 고충을 토로하고 배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단법인 ▼▼’ 등 19개 단체[107]가 지원배제되도록 하는 등 [별표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문예위 공모사업 등에 지원을 신청한 단체 중 총 298개[108]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심의과정에서 지원배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예위가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특정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하거나 공모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문예기금 지원에서 배제함으로써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았고 국민의 문화권 및 문화 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문예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

107)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던 36개 단체 중 17개 단체는 심의과정에서 지원배제 개입 없이 탈락함
108)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나.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① CP의 경우

문체부 ◇실 ○관 CP는 2014. 11. 11.부터 2015. 7. 30.까지 ◈관의 직위에서 예술진흥 정책의 수립,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등 ◈관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CP는 2014년 11월경 U로부터 문예위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의 신청자 현황 및 세부 명단을 제출하고 신청자 중 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문예위를 담당하는 CN에게 전달하면서 U에게 공모사업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CP는 2015년 1월 U로부터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CQ 등 12명의 성명(또는 단체명)을 유선을 통해 전달받으면서 "지원대상에서 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그리고 CP는 지원배제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시키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위 사업 신청자 CQ 등 12명의 성명(또는 단체명)을 별도의 메모지에 적어 CN에게 전달하면서 U가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CP는 CN 등 ◈관 소관 부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지원사업 신청자 중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CP는 본인이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CN에게 지원배제하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CN이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원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는 등 10~20차례에 걸쳐 ◈관 소관 부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109]

이에 따라 문체부 ⊠과 CR이 2015년 4월경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문예위의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과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321개 단체 중 '극단 ㅅㅅ' 등 31개 단체명을 문예위 ◘원 전문위원 CS에게 유선으로 알려주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문예위 ◘원장 CT는 2015. 5. 22.(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및 2015. 6. 11.(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 간사로 참석하여 지원배제 대상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는 정부 방침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단체입니다. 지원배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 전부가 폐지되어 모든 단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정부의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극단 ㅅㅅ' 등 31개 단체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CP가 ◈관으로 근무한 기간(2014. 11. 11.~2015. 7. 30.) 동안 문예위 등 산하기관이 심의과정 등에서 지원배제를 이행하는 등 총 187개[110]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함으로써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한편, 문예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109) CP는 지원배제가 일상적인 일이었으므로 ◈관 소관 부서가 지원배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더라도 지원배제가 시스템화되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음

110)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② BC의 경우

문체부 국립국어원 ◆부장 BC는 2015. 7. 31.부터 2017. 2. 2.까지 目실 ◈관의 직위에서 예술진흥 정책의 수립,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등을 총괄·감독하였다.

BC는 2015년 8월경 전임자인 CP로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지원배제를 요구하면 이를 문예위 등이 이행하도록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원배제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았고, 또한 AG 등으로부터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아 문체부가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원배제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BC는 AG로부터 지원배제 체계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이미 지원배제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6년 6월 초순경 문예위의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자 중 특정인사·단체의 지원배제 지시 이행을 중지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2)-가-③항"의 내용과 같이 문예위의 공연예술스태프 지원사업 신청단체 중 '사단법인 ▼▼' 등 19개 단체가 지원배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BC는 ◈관으로 근무한 기간(2015. 7. 31.~2017. 2. 2.) 동안 문예위가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47명)하거나 공모 지원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162개)하는 등 총 209건[111]의 선정 및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한편, 문예위 등 산하기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111)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③ AC의 경우

문체부 ◆실장 AC는 2016. 4. 11.부터 2016. 11. 22.까지 目실장의 직위에서 문화예술 분야 정책 전반 등을 총괄하였다.

그런데 AC는 2016년 4월 AU로부터 문예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배제 지시 및 문체부(目실)의 이행사실을 자세히 보고받고도 위 지시의 이행을 중지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2)-가-③항"의 내용과 같이 문체부 目실의 지시에 따라 문예위가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신청단체 중 사단법인 ▽▽ 등 19개 단체를 지원배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AC가 目실장(2016. 4. 11.~11. 22.)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이 지원배제 지시이행을 중지하도록 하지 않아 문예위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47명)하거나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 지원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59개)함으로써 총 106건[112]이 선정 및 지원이 배제되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한편, 문예위 등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④ CO의 경우

문예위 위원장 CO는 2015. 6. 9.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예위를 대표하고 문예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문예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심의·의결하는 등 문예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12)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한편 CO는 2015년 6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문예위 #본부장 HH 등으로부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하여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CO는 2015년 6월 중순경 HH 등으로부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중 위 지원사업의 심의위원들이 2차 심의(2015. 3. 31., 2015. 4. 1.)를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94명의 특정 문화예술인 중 지원배제를 지시받은 14명이 포함되었고, 3차 심의(2015. 6. 5.)에서 위 14명이 배제되지 않아 심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앞으로 심의를 재개하여 논의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전임 위원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사유로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전임 위원장과 협의했던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CO는 2015년 7월 초순경 HH로부터 3차 심의(2015. 6. 26.)에서 심의위원들이 위 14명을 지원배제하지 않은 채 94명을 선정한 데 대해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7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협의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원배제 지시가 부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위 사업이 지연되어 민원이 많다는 사유로 빨리 처리하라고만 지시하였다.

이후 CO는 2015. 7. 16. 문예위(사무처)가 지원배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7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문서에 결재하여 문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한 후, 같은 해 7. 17. 자신이 직접 서면결의하고 다른 위원들도 서면결의하도록 하는 등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직접 이행함으로써 위 지원사업에서 25명의 특정 문화예술인이 부당하게 지원배제되었다.

또한 CO는 2015년 6월 중순경 업무보고 등의 자리에서 문예위 ◘원장 CT로부터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문체부(◈관실)의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고, 이를 전체회의 전 분야별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재심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CO는 2015. 6. 25. 개최된 제162차 문예위 전체회의에 문체부 지원배제 지시가 반영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한 후 CT가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지원배제 지시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위 회의에서 설명하였는데도 심의·의결하여 ‘극단 ㅅㅅ’ 등 15개 단체가 지원배제되도록 하는 등 문예위(사무처)가 심의과정에서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지원배제를 이행하는 것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면서도 지원배제 지시 이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CO가 위원장으로 근무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예위(사무처)가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배제를 이행하였고, CO는 문예위 전체회의 의장으로서 지원배제가 반영된 심의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여 심의·의결하는 등 문예위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배제(47명)하거나 문예위가 추진하는 지원사업 등에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208개)하는 등 총 255건[113]을 선정·지원배제함으로써 해당 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편, 문예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113)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2) 한문연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제40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한문연의 설립을 인가하고, 문체부 예산의 범위에서 한문연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검사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한문연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작품성 및 대중성 등이 검증된 민간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공모로 선정하고 이 중 각 지역문화예술회관[114]이 특정 공연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문연이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14)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기관 또는 재단법인을 통해 운영 중인 지방의 문화예술회관

특정 공연을 지역문화예술회관에 배정하고 경비의 일부[115]를 문예기금으로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하 "문화공감사업"이라 한다)'[116]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문연이 문화공감사업의 지원 대상 공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매년 마련한 「심사계획」에 따르면 심의단계별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117]을 선정하여 작품성, 사업수행능력, 타당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모자격의 결격사유[118]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한문연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공연단체를 문화공감사업에서 지원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공연단체가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2-1)-(1)항"과 같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문연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아 특정 공연단체가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 지원비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광역시 및 도립의 경우 40% 지원, 재정자립도 20% 이상인 경우 50% 지원,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경우 60% 지원)

116) 2015년 사업예산: 5,200백만 원

117) 1차(분야별) 심사: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다원예술 장르별로 3인씩, 총 15인
2차(선정) 심사: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7인
3차(예산) 심사: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5인

118)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 등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체부 ⛝과 CR이 2015년 1월 ◈관 CP의 지시에 따라 ◈실 선임행정관 U에게 2015년도 문화공감사업 신청자 839개 공연단체 명단을 송부한 후 U로부터 주식회사 ㅁㅁ 등 22개 공연단체의 이름이 적힌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한문연(사무처)에 위 명단의 단체를 지원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문연(사무처)은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5. 1. 28. 문화공감사업 1차 심의 시 심사위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공연단체들과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배제지시가 있었던 단체들의 명단을 함께 알려 주었다.

그 결과 [별표 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9개[119] 공연단체가 부당하게 문예기금 지원에서 배제되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문화공감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문체부(◈관실)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문예위와 한문연 이외에 ∴∴재단 등 6개 기관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별표 9] “∴∴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와 같이 계 34건을 지원배제하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예위 등 8개 기관이 총 417건[120]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지원배제하였다.

---

119)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던 22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120) 서로 다른 공모사업 등에서 2차례 이상 지원배제된 단체를 중복으로 산정하였음

3. 영화 관련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특정 전용관 등 부당 지원배제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3조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영진위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승인을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영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는 것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와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영진위 규정)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영진위는 영화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고,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영화기금의 관리·운용 등과 관련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영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영진위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전용관 등을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전용관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2-1)-(1)항"과 같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진위는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아 특정 전용관 등이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으로 영진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영진위 영화기금 지원대상 부당 배제

가. 특정 전용관 부당 지원배제

그런데 문체부(○관실)는 2014. 4. 23. 영화 'ㅂ'를 상영한 ㅅ(예술영화전용관)을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4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121]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영진위(사무국)에 하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진위(사무국)는 ㅅ을 "2014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초 2014. 4. 16.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진행된 예비심사 결과(ㅅ 등 25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를 철회한 후 상대적으로 지원금 의존율이 높고[122] 시설이 열악한[123] ㅅ에 불리한 "지원금 의존율 개선 실적" 등[124] 심사항목을

121) 2014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2,694백만 원(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 1,340백만 원, 독립영화전용관

추가하거나 “상영관 시설”[125] 등 심사항목의 배점을 높인 후 위 사업을 재공고하여 2014. 7. 22.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진행된 재심사 과정에서 ㅅ이 “2014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문체부(○관실) ◘과 CU는 ◘과장 CV로부터 2014년 10월 중순경 영화 ‘ㅇ’ 등을 상영한 특정 독립영화전용관(ㅈ, ㅊ)을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126]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실 행정관 CW의 지시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문체부 ○관 AC에게 보고한 후[127] 영진위 回부장 CX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X는 2015년 1월 중순경과 같은 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ㅈ(서울 성북구 소재)과 ㅊ(서울 종로구 소재)을 지원배제하기 위해 국회 지적사항(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편중 지원 개선 필요) 등을 명분으로 하여 ㅈ, ㅊ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서울 지역 이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계획(안)”(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영진위 위원장 CE에게 보고하자, CE는 문체부의 지시대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진위는 2015. 4. 29.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위 사업계획의 내용과 같이 개편하는 등 ㅈ과 ㅊ을 “2015년도 전용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운영지원 894백만 원, 시네마테크전용관 운영지원 460백만 원)

122) 영진위가 2014. 5. 9.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상대적으로 지원금 의존율(매출액 대비 지원금)이 높은 전국 11개 단관형 전용관의 평균 5개 연도(2009~2013년) 지원금 의존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ㅅ(143%)은 3번째로 지원금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123) ㅅ은 관람객 대기실 등에 난방시설 없이 구형 난로를 사용하고, 영화 상영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물(상영관 중앙에 위치한 기둥)로 인해 영사기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 영상 화질이 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전용관에 비해 관람객 유치 및 영화 상영에 열악한 시설임

124) 당초 2014년 4월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예술영화 수급구조 안정에 대한 기여도”(총점 100점 중 10점 배점)를 평가하였으나 2014년 8월 다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지원금 의존율 개선 실적, 자구책 마련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총점 100점 중 15점 배점)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배점을 조정하였음

125) 당초 2014년 4월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총점 100점 중 10점을 배점하였으나 2014년 8월 다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총점 100점 중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126)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2,914백만 원(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1,560백만 원,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894백만 원, 시네마테크전용관 선정지원 460백만 원)

127) AC는 CU로부터 CW의 지시에 따라 ㅈ과 ㅊ에 대해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 지원금 지원을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도록 그대로 두었음

나. ㅋ(영진위 직영 독립영화전용관)의 영화 'ㅇ' 상영요청 부당 거부

영진위는 2010년부터 독립영화 등을 상영하는 ㅋ을 직접 운영하면서 특정 독립영화의 상영요청을 받은 경우 영화상영 일정 등을 검토한 후 문화 다양성 및 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를 위해 가능한 한 상영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CV는 CW로부터 2014년 10월 중순경 영화 'ㅇ'의 상영을 최대한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문체부(○관실) ◘과 CY 등을 통해 AC에게 보고하였으나 AC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후 CY는 CV로부터 위 지시를 전달받아 2014. 10. 17.경 영진위(사무국)에 영화 'ㅇ'을 상영할 예정인 일부 전용관에 상영 중지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영진위(사무국)는 2014. 11. 6.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ㅋ에서의 영화 'ㅇ' 상영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 영화를 상영할 경우 문체부(○관실)로부터 받게 될 압박감과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영화 'ㅇ'을 상영해도 되는지 문체부(○관실)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문체부(○관실)가 상영하지 않도록 지시하자 영진위(사무국)는 위 상영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부당 삭감

더욱이 CV는 2015년 4월 CW로부터 영화 'ㅇ'을 상영[128]하였다는 사유로 영진위가 추진하는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 지원금의 50% 내외 수준(약 730백만 원)으로 삭감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후 문체부 ○관 C에게 보고하였으나 C는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두었다.[129]

128)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2014. 10. 2.~10. 11.)를 개최하면서 2014. 10. 6.과 같은 해 10. 10.

이후 CE는 CV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후 영진위(사무국)로 하여금 2015. 4. 17. 예비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이 집중(전체 사업비의 42.9%)되어 있는 점[130]과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131]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예산을 1,000백만 원 이하로 축소하여야 하는 상황을 부각하는 등 심사의 방향을 유도하는 심사자료를 배포하도록 결재하였다.

그리고 CE는 2015. 4. 27. 위 지원사업의 결정심사를 진행하면서 총 7명[132] 중 4명(의결정족수 5명)의 심사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750백만 원으로 삭감 등)에 대해 반대하자 가결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예비심사결과 대비 50백만 원 상향)으로 제안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심사위원 중 2명에게 휴회 시간 중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문체부(○관실)의 지시사항[133]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설득하였으나 남은 심사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거세게 내자 예비심사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 일부 상향을 전제로 재심사하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영화 'ㅇ'을 상영하였음

129) 당초 CV는 2015년 1월 말 CW로부터 영화 'ㅇ'을 상영하였다는 사유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인 AC(전임)와 C(후임)에게 보고한 후 일부 삭감 검토 요청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CW에게 보고한 바 있음

130)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예비심사(2015. 4. 17.)의 심사자료에는 최근 4개년(2011년~2014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체 예산규모 대비 영진위의 평균 지원금 비중이 약 12%로 위 지원사업에 신청한 영화제 중에서 가장 낮거나 2번째로 낮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위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 비중이 약 43%인 점을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 참고 사항"을 통해 부각하였음

131)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1조 등에 따른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4. 관리 일반에 따르면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00백만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1,000백만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부산국제영화제는 2018년부터 지원예산을 1,000백만 원 이하로 축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132)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결정심사에는 8명의 심사위원이 참석(1명 미참석)하였으나 이 중 1명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여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영진위)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결권자는 7명이었음

133) CE는 휴회 시간 중 영진위(사무국) 담당자(CE는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함)로 하여금 문체부(○관실)의 의견을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하였고, 문체부(○관실)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 이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를 전달받음

제안한 후 위원들의 찬성 의견을 유도하여 이와 같이 예비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처리하였다.

이후 예비심사위원회는 2015. 4. 28. 다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결정심사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액을 800백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CE는 이를 결정심사에 재상정하여 결정심사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전년도 대비 660백만 원 삭감)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별표 1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당 배제 명세”와 같이 문체부 등 외부기관의 지시 등에 따라 계 5건[134]이 영화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특정 전용관 등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진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2)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AC의 경우

문체부 ◆실장 AC는 2014. 10. 13.부터 2015. 3. 30.까지 ◇실 ○관의 직위에서 콘텐츠 분야 정책 전반 등을 총괄하면서 영진위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AC는 2014년 10월 중순 및 2015년 1월 말경 문체부(○관실) ◘과장 CV 등으로부터 ◈실 행정관 CW가 영화 ‘ㅇ’을 상영한 전용관 지원배제 및 부산국

134) 문체부(○관실)는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영진위 지원사업에서의 특정 전용관 등에 대한 계 8건의 지원배제 지시를 받아 이를 영진위(⋈국)에 전달하여 이 중 5건은 영진위(⋈국)가 지원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였고, 나머지 3건(영화 ‘ㅌ’ 등 3개 영화)은 “2015년도 예술영화제작 지원사업”의 심사과정에서 점수미달로 탈락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영진위(⋈국)가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위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2)-(1)-가~다항"의 내용과 같이 문체부(○관실)는 영진위(사무국)에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위 지시내용을 전달하여 이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영진위는 ㅈ와 ㅊ를 "2015년도 전용관 운영 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하였으며, 부산국제영화제의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지원금을 2014년 대비 45%(1,460백만 원에서 880백만 원으로 삭감) 삭감하였다.

나. CE의 경우

영진위 위원장 CE는 2014. 12. 31.부터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진위를 대표하고, 영진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영화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심사·의결하는 등 영진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도 CE는 부임 이후 2015년 1월 중순경과 같은 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영진위 ㉦부장 CX로부터 영화 'ㅇ' 등을 상영한 특정 독립영화전용관(ㅈ, ㅊ)을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하라는 문체부(○관실) ◈과 CU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지적사항(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편중 지원 개선 필요) 등을 명분으로 하여 ㅈ(서울 성북구 소재) 및 ㅊ(서울 종로구 소재)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계획(안)"(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상세하게 보고받고도 문체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은 채 보고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E는 영진위 담당자 CX로 하여금 2015. 2. 11. 개최된 '2015년 제2차 임시회의'에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였으나 위원들이 2014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수행평가(2015. 1. 14.~1. 15.) 결과(ㅊ: A등급, ㅈ: C등급)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반대하자 CX에게 관련 근거 및 논리 등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CX 후임인 ※본부장 CZ는 법률 자문 검토를 받거나 위탁 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CE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CE는 2015. 4. 27. 개최된 제5차 정기회의와 2015. 4. 29. 개최된 제6차 임시(서면)회의에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재상정하도록 결재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후 최종적으로 ㅈ와 ㅊ이 "2015년도 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CE는 2015년 4월 CV로부터 영화 'ㅇ'을 상영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2014년도 지원금(1,460백만 원)의 50% 내외 수준(약 730백만 원)으로 삭감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CE는 CV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2015. 4. 27. 진행된 결정심사에서 총 7명 중 4명(의결정족수 5명)의 심사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750백만 원으로 삭감 등)에 대해 반대하자 가결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00백만 원(예비심사결과 대비 50백만 원 상향)으로 제안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문체부(○관실)의 지시(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상한액 800백만 원)를 언급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는 등 결정심사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800백만 원(전년도 대비 660백만 원 삭감)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하였다.

4. 출판 관련 세종도서사업 특정 도서 부당 지원배제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의2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출판·간행물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출판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하는 것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한편,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6조의4, 제21조와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출판진흥원 지침) 등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양서출판 의욕을 진작시키고 국민의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술·문학·교양 등 3개 분야별로 출판물을 심사하여 선정한 후 각 선정된 도서(이하 “세종도서”라 한다)별로 10백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세종도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출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출판진흥원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도서가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2-1)-(1)항"과 같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판진흥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아 특정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하는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문체부(◐관실) 回과장 DB는 2014년 11월 ◈실 행정관 DC에게 세종도서사업 최종 심사대상 도서목록을 송부한 후, DC로부터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아야 할 도서(이하 "지원배제 대상도서"라 한다)의 목록(문학 분야 9종[135])을 전달받아 출판진흥원에 알려 주면서 지원배제 대상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출판진흥원(사무처)은 위 지시를 따르기 위해 2014년도 세종도서 문학 분야 최종 심사 시(2014. 11. 14.) 심사위원들이 지원배제 대상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ㅍ"에 대해 논의할 때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가인 "체 게바라"와 관련된 도서인 "ㅎ"가 2013년도 우수도서(전 세종도서)로 선정된 데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문체부 등의 우려[136]를 언급하여 "ㅍ"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출판진흥원(사무처)은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대상 도서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부각되게 설명하여 해당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137]으로써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2015년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해서도 문체부 ▣과장 DB는 2015년 10월 ◈실 행정관 DC가 지원배제 대상도서 목록(2015년 문학분야와 교양분야 15종[138])을 알려주면서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자 이를 상급자인 ◐관 DA에게 보고하였으나 DA는 DB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유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B는 출판진흥원 ◑본부장 DD에게 ◈실 행정관 DC로부터 전달받은 지원배제 대상 도서를 알려주고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출판진흥원(사무처)은 2014년도의 경우와 같이 문체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2015년도 세종도서 최종 심사 시(문학 분야: 2015. 10. 29., 교양 분야: 2015. 11. 6.) 지원배제 대상 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논의할 때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부각되게 설명하여 해당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139]으로써 총 13종[140]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

135) 문체부가 최초 15종 가량의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출판진흥원이 지원배제 대상 도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9종으로 축소

136) 2014년 2월 언론사에서 사회주의 혁명가인 체 게바라의 일생을 홍보하고 미화하는 "ㅎ"이 2013년도 우수도서(전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전국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다는 보도

137) 출판진흥원은 지원배제 대상 도서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부각되게 설명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함

138) 문체부가 최초 20종 가량의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출판진흥원이 지원배제 대상 도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최종 15종으로 축소

139) 출판진흥원은 지원배제 대상 도서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부각되게 설명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함

140) 지시받은 지원배제 대상 도서 15종 중 2종은 세종도서로 선정

그 결과 [별표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부당 선정배제 명세”와 같이 문체부 등 외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총 22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는 등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세종도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5.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지시 이행 총괄관리 TF 부당 운영

문체부(기획조정실)는 정치 편향적인 작품 등에 대한 지원배제 등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6월경부터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이하 “건전TF”라 한다)[141]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문체부장관 김종덕이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영화·출판 등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건전TF를 구성하여 2015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였다.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영상·출판·간행물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2~4항”의 내용과 같이 ◈관실 등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141) 문체부(◎실)에서 2014년 6월에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TF(실장급 회의체)를 구성하였으나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전TF가 운영됨. 2014년 10월 구성·운영된 건전TF는 예술·영화·출판 등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 등을 위해 ◎실장을 TF 단장으로, ::관을 TF 부단장으로, ◒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관(또는 ∸과장), ◈관(또는 ◈과장), ⧅관(또는 -:과장), ○관(또는 ⚙과장)과 ◐관(또는 ≒과장) 등이 매주 1회 참석하여 예술·영화·출판 등 분야별 지원배제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됨

문예기금 등을 지원하는 산하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중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이 명단을 알려주며 지원·배제하도록 지시하는 상황에서 건전TF는 지원배제 실적 점검 등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체부 ◎실장 DE는 2014년 10월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장관으로부터 문체부 지원사업 중 정치적인 작품 등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 후 대응방안을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DE는 ◎실 ◒담당관 DF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후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3개 분야별 정치편향 작품 등을 지원배제하기 위한 세부 대응전략이 기술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142]을 참고하여 DF가 작성·정리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이하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이라 한다)[143] 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장관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

142) 2014년 6월에 최초 작성된 후 2014년 8월에 반정부 성향에 대한 심사강화 등 내용이 추가·수정되었고, 2014년 10월에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장관이 DE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후 DE는 DF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DF가 2014년 8월 작성된 보고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위 실행계획을 작성함. 위 실행계획 내용은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전단계에서 지원심의 및 관리운영기준을 강화하고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 편향 작품, 단체, 예술가 선정을 배제하며 정치 편향성이 강한 진보 인사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공모 및 심사단계에서 철저한 검증 및 대응을 하도록 하는 분야별 세부 대응전략이 기술

143)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은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지원)의 경우 심사단계 1차 검증 강화,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와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 검토하고,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하는 등 심사 강화와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다음 연도 지원예산 삭감, 타 영화제 작품 선정 시 사전에 문제영화 차단효과)가 필요하며, 미디어(우수도서 선정)의 경우 심사 절차, 심사 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각 세부 분야별 개선방향을 기술하고 이에 따라 위험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절차 및 기준 개선, 업무처리 단계별 세부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 철저, 상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그 후 DE는 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등 보고내용[144]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건전TF의 단장으로서 건전TF를 2015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였다.

그런데 DE는 건전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술·영화·출판 등 각 분야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관련 ◈관실 등 소관 실·국·과 참석자들과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경과와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관련 실적 등 현황 점검 및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논의[145]하였다.

그리고 건전TF 간사인 ◒담당관 DG 등으로 하여금 건전TF에서 논의된 관련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2015. 2. 25., 3. 16., 4. 20.) 문서 등[146]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화체육비서관실에 위 문서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DE는 2015년 2월경 건전TF 회의에서 '장르, 단체명, 대표자명, 비고란'으로 구성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명단을 ◈관실 등 소관 실·국·과 참석자와 공유하였다.[147]

---

144) DF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보고서를 담당 부서에 전달한 기억은 없으나 ◈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배제와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건전TF 회의에 제출하였고 회의 내용이 장관과 대통령비서실까지 보고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건전TF 회의에 제출한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보고서가 3개 분야(예술, 영화, 출판)에서 지원배제가 실행되는 액션플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함

145) CV가 건전TF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의 상영관 수, 관람객 수까지 궁금해 한다"고 하였고 DE는 "그런 내용이 TF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문예위 공모사업에 관심이 많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라"라고 언급함

146)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2015. 2. 25., 3. 16., 4. 20.) 문서에는 미디어(출판)분야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이념편향성 등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공모 시 공공성을 보다 고려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하거나, 예술의 경우 "각종 리스트 관리·공유 중, 사전 스크리닝 부담에 따른 추진상 애로 가중" 등 건전TF에서 논의된 사실이 기술

147) DG에 따르면 2015년 2월경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은 없지만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건전TF 회의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당시 건전TF 회의에 ◈관실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2015. 2. 18. 설 연휴 직전에 있었던 건전TF 회의에서 DG가 AG에게 지원배제 명단을 뒤늦게 전달함

그러고 나서 2015년 3월경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ㄲ'와 'ㄸ' 등이 문예위 공모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DE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질책을 받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AG를 불러 'ㄲ' 등을 지원배제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148]하고 재발방지를 지시[149]하였다.

이와 같이 DE는 건전TF 단장으로서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전TF 회의를 통해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경과와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관련 실적 및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사항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회의결과를 문화체육비서관실에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명단을 건전TF 참석자와 공유한 후 이에 대한 이행관리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실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이행 관련 부서는 건전TF 회의에 제출한 산하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지원배제 관련 보고내용을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문체부는 2014년 3월부터 "2~5항"의 내용과 같이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문예위 등 산하기관에 그 직무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계속 받고 있으면서 문체부 및 문예위 등 산하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이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문체부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 등의 심사 방해 금지 및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급

148) 장관의 지시로 DE가 AG를 불러 위 2개 단체를 지원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 물어보았고, AG는 지원배제 명단을 늦게 받아 참고사항으로 판단해서 참고만 했고 지원배제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DE는 장관이 경위서에 따라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달하여 AG는 이와 같은 사실을 경위서에 적어 DE에게 제출함

149) DE는 AG를 불러 '장관께 위 ㄲ 등이 지원배제되지 않은 경위를 보고드렸고, 장관이 앞으로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함

기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150] 2016년 9월까지 계속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문체부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와 심사 개입으로 훼손된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자 예산편성과 심의절차,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부당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규정을 추가할 예정[151]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문체부는 특정 문화예술인 부당 지원배제와 관련하여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질책, 인사조치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무자들이 매우 어렵게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런 와중에도 최대한 적용범위를 줄이고자 노력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답변과 함께 건전TF는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원배제 요구에 대해 대응 차원에서 구성·운영된 회의로서 주로 해당 실·국이 진행하는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 관련 사업 등 추진상황이나 특이사항, 애로점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며, 지원배제 논의나 지시, 지침 시달, 실적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배제 이행관리를 총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견을 제시하였다.

---

150) 문체부 문화·예술 지원 등 업무 관련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151) 문체부는 감사원 감사 관련하여 2017. 3. 9. 문화예술 지원배제 재발 방지대책으로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절차 등을 개선하여 문화예술지원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표현의 자유·심사 방해 등 형사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여 예술가 권익 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문체부 행동강령을 개선하는 등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중임

그러나 DE는 감사원 문답과정에서 건전TF는 예술·영화·출판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과 등 소관 과가 실시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실적을 취합·보고하고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좋아하지 않는 특정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었고, 건전TF 간사인 ◒담당관 진행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예술, 영화, 출판 관련 국·과장 등이 순차적으로 소관 분야별로 공모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경과,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실적 등 현황, 그리고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문제시할 만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관련자들도 감사과정에서 건전TF 회의는 지원배제를 직접 지시하는 통로는 아니었지만,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직접적인 지원배제 지시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시스템으로서, 문체부장관의 지시로 ◎실장이 ◈관실뿐 아니라 영화, 출판 등 지원배제가 이루어지는 관련 실·국·과의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원배제 지시사항 이행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독려하는 문체부 내부의 관리시스템이었고, ◈과 등 관련 부서는 건전TF 회의에 지원배제와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회의 내용이 장관과 문화체육비서관실까지 보고되고 있어 건전TF 회의에 제출한 내용과 같이 지원배제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건전TF 회의에서 지원배제 논의나 지시, 지침시달, 실적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② 문예위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정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가 문예위 공모사업에 선정·지원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문예위의 정책

신뢰도 저하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독립성, 책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③ 한문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외부기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으로 특정 공연단체가 지원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④ 영진위는 상급기관의 특정 전용관 지원배제 지시에 대해 거부할 경우 기관의 업무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영진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앞으로 지원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거나 영진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만, “2015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의 예비심사 자료의 경우 심사의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닌 실무 차원에서 자문회의 등의 의견을 제고하고 관계 훈령 및 지침을 확인하여 사업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심사자료의 “3.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 참고사항”은 전체 사업비의 약 42.9%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가 설시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에 비해 예산 규모가 최소 3.2배, 최대 13.1배 크고 이로 인해 예산규모 대비 영진위의 지원금 규모가 약 12%(위 지원사업에 신청한 7개 영화제 중 가장 낮거나 2번째로 낮음)인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등 균형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 훈령(「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일뿐만 아니라 2016년도 사업 심사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심사의 방향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영진위 위원장 CE와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담당자(⋈부장 DH, ⋈부팀장 DI)의 진술에 따르면 위 심사자료가 심사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자료라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영진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출판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종도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지시를 거부하지 아니한 CP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15번 참조】

※ AC는 이 건 행위와 '1-(2)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등 선정 및 정산 부당처리'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3번 참조]

※ BC는 이 건 행위와 '1-(7) 늘품체조 지원 및 지원경위에 대한 국회답변 부적정', '3-(1)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부당 선정'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함

[개별처분요구사항 4번 참조]

②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부당 지원배제를 주도하는 등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CO의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며

③ 특정 전용관 등에 대한 부당 지원배제를 주도 등을 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영화예술단체 등을 차별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CE의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④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공모 지원사업 신청자 중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실적 점검 등을 하여 해당 부서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행되도록 총괄 관리한 DE(현 문화체육관광부 ⊠관)의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며**[통보(인사자료)]**

【개별처분요구사항 14번 참조】

⑤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산하기관 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행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⑥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고**(주의)**

⑦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심사방해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직무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심의위원을 선정배제하고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외부기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공연단체를 지원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전용관 등을 지원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10)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부적정

1. 업무 개요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문예위가 집행한 문예기금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예위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문예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여 민간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에 오페라 분야(우수작품 제작지원)와 연극 분야(우수작품 제작지원) 별도로 각각 3억 원과 10억 원을 편성한 후 이를 집행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문예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문예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과 부담금 등이고,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문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문예위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예위는 보조금법 규정과 국고와 기금의 역할 분담 취지 등을 고려하여 문예기금 중 민간에 교부할 보조금은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문예위가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보조금 예산을 국가기관의 사업에 지원하도록 위법·부당한 간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문예위는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관의 사업에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예위 소속 구 창작지원부(이하 “창작지원부”라 한다)는 2015년 9월 말경 문체부로부터 오페라 분야와 연극 분야의 우수작품 제작지원 용도로 편성된 보조금 예산 중 미집행 중인 총 6억 원(오페라 분야 3억 원과 연극 분야 3억 원)[225]을 국립중앙극장에서 ‘ㄱㅂ’을 제작·공연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요청받은 데 대해 민간에 지원해야 할 보조금 예산이라는 사유로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체부가 계속 위 사업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자 2015. 10. 23. 문체부로부터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은 후 문예위 위원 중 오페라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과 연극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에게 민간에 지원할 예산을 국립중앙극장에 지원하기 곤란한데도 문체부가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예산 지원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페라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과 연극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은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문예기금을 국립 단체(기관)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알고 있었지만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창작지원부는 문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의결될 때 해당 분야 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이 그대로 수용되는 관례를 고려하여 2015년 10월 말경 예산 6억 원을 ‘향연’의 제작·공연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통보하였다.

그러고 나서 창작지원부는 오페라 분야와 연극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게 ‘민간에 지원할 예산을 국립중앙극장에 지원하기 곤란한데도

225) 오페라 분야의 우수작품 제작지원 예산 3억 원은 2015. 6. 9.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작품이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 중이었으나 2015. 6. 25. 개최된 제162차 문예위 회의에서 향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규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고, 연극 분야의 우수작품 제작지원 예산 10억 원 중 7억 원은 2015. 4. 7.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작품을 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문체부가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해당 분야 위원들의 사전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예위는 2015. 11. 13. 제17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오페라 분야와 연극 분야의 예산 총 6억 원을 민간이 아닌 국립중앙극장에서 '향연'을 제작·공연하는 사업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의결한 후 2015. 11. 24. 국립단체(기관)에 직접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립중앙극장이 아닌 재단법인 국립극장진흥재단에 위 예산 6억 원을 교부한 후 국립중앙극장의 'ㄱㅂ' 제작·공연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예위가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6억 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국립중앙극장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한편, 문예기금을 집행하는 문예위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문예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이번 사례와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보조금 예산을 국가기관의 사업에 지원하도록 위법·부당한 간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다르게 국가기관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부당 선정배제 명세

연번	심의위원 선정	선정배제 대상자	선정(발표)일	비고
1	201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	IY (문학분야)	2014. 3. 28.	선정배제
2		- (문학분야)	〃	〃
3		- (문학분야)	〃	〃
4		- (문학분야)	〃	〃
5		- (문학분야)	〃	〃
6		- (문학분야)	〃	〃
7		- (문학분야)	〃	〃
8		- (문학분야)	〃	〃
9		- (문학분야)	〃	〃
10		- (문학분야)	〃	〃
11		- (문학분야)	〃	〃
12		- (문학분야)	〃	〃
13		- (시각예술분야)	〃	〃
14		- (연극분야)	〃	〃
15		- (연극분야)	〃	〃
16		- (무용분야)	〃	〃
17		- (무용분야)	〃	〃
18		- (음악분야)	〃	〃
19		- (전통예술분야)	〃	〃
20	2016년도 심의위원 풀 선정	-	2016. 7. 29.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CP	〃	〃
28		AD	〃	〃
29		-	〃	〃
30		-	〃	〃
31		-	〃	〃
32		-	〃	〃
33		-	〃	〃
34		-	〃	〃
35		-	〃	〃
36		-	〃	〃
37		-	〃	〃
38		-	〃	〃
39		-	〃	〃
40		-	〃	〃
41		-	〃	〃
42		-	〃	〃
43		-	〃	〃

연번	심의위원 선정	선정배제 대상자	선정(발표)일	비고
44	2016년도 심의위원 풀 선정	-	〃	〃
45		-	〃	〃
46		-	2016. 7. 29.	선정배제
47		-	〃	〃
48		-	〃	〃
49		-	〃	〃
50		-	〃	〃
51		-	〃	〃
52		-	〃	〃
53		-	〃	〃
54		-	〃	〃
55		-	〃	〃
56		-	〃	〃
57		-	〃	〃
58		-	〃	〃
59		-	〃	〃
60		-	〃	〃
61		-	〃	〃
62		-	〃	〃
63		-	〃	〃
64		-	〃	〃
65		-	〃	〃
66		-	〃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재구성

[별표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	문학창작 활동지원 (아르코문학 창작기금)	2014. 11. 11.	-	아르코창작기금	2015. 7. 17.	지원배제
2		〃	-	-	〃	〃
3		〃	-	-	〃	〃
4		〃	-	-	〃	〃
5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6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7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8		〃	-	-	〃	〃
9		〃	-	-	〃	〃
10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11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16		〃	-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26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	-	-	2015. 3. 31.	〃
27		〃	-	-	〃	〃
28		〃	-	-	〃	〃
29		〃	-	-	〃	〃
30		〃	-	-	〃	〃
31		〃	-	-	〃	〃
32		〃	-	-	〃	〃
33		〃	-	-	〃	〃
34	시각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	-	시각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2015. 2. 4.	〃
35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지원	〃	-	-	2015. 3. 31.	〃
36	국제교류기반 강화지원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1차)	〃	-	-	2015. 3. 31.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37	다원예술 창작지원	2014. 11. 11.	-	-	2015. 2. 4.	지원배제
38		〃	-	-	〃	〃
39		〃	-	-	〃	〃
40		〃	-	-	〃	〃
41		〃	-	-	〃	〃
42		〃	-	-	〃	〃
43		〃	-	-	〃	〃
44		〃	-	-	〃	〃
45		〃	-	-	〃	〃
46		〃	-	-	〃	〃
47		〃	-	-	〃	〃
48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1차	〃	-	-	2015. 3. 31.	〃
49		〃	-	-	〃	〃
50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1차 (국제교류중기기획 프로젝트지원)	〃	-	-	〃	〃
51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 -1차(연극)	〃	-	-	〃	〃
52		〃	-	-	〃	〃
53		〃	-	-	〃	〃
54		〃	-	-	〃	〃
55		〃	-	-	〃	〃
56		〃	-	-	〃	〃
57		〃	-	-	〃	〃
58	시각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	-	-	2015. 2. 4.	〃
59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	-	-	2015. 3. 31.	〃
60		〃	-	-	〃	〃
61		〃	-	-	〃	〃
62		〃	-	-	〃	〃
63		〃	-	-	〃	〃
64		〃	-	-	〃	〃
65		〃	-	-	〃	〃
66		〃	-	-	〃	〃
67		〃	-	-	〃	〃
68		〃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
69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1차(기획형)	〃	-	-	〃	〃
70		〃	-	-	〃	〃
71		〃	-	-	〃	〃
72		〃	-	-	〃	〃
73	소외계층 문화순회 (농산어촌)	2014. 11. 27.	-	-	2015. 1. 21.	〃
74		〃	-	-	〃	〃
75		〃	ㅿ ㅿ	-	〃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76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회복지시설)	2014. 11. 27.	-	-	2015. 1. 21.	지원배제
77		〃	-	-	〃	〃
78		〃	-	-	〃	〃
79		〃	-	-	〃	〃
80		〃	-	-	〃	〃
81	소외계층 문화순회 (임대주택)	〃	-	-	2015. 1. 21.	〃
82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시범공연-일반)	2014. 12. 22.	-	-	2015. 2. 9.	〃
83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시범공연-청소년)	〃	-	-	〃	〃
84	공연예술 행사지원	2014. 12. 23.	-	-	2015. 2. 4.	〃
85		〃	-	-	〃	〃
86		〃	-	-	〃	〃
87		〃	-	-	〃	〃
88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시범공연)	2015. 1. 12.	-	-	2015. 3. 4.	〃
89		〃	-	-	〃	〃
90		〃	-	-	〃	〃
91		〃	-	-	〃	〃
92		〃	-	-	〃	〃
93		〃	-	-	〃	〃
94		〃	-	-	〃	〃
95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2015. 1. 30.	-	-	2015. 3. 6.	〃
96	차세대예술인력 육성(공연예술)	2015. 3. 11.	-	-	2015. 6. 2.	〃
97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우수 작품재공연)	2015. 3. 16.	-	-	2015. 6. 5.	〃
98		〃	-	-	〃	〃
99	서울국제공연 예술제	2015. 3. 25.	-	-	2015. 6. 8.	〃
100	국제교류기반 강화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2015. 3. 26.	-	-	2015. 6. 30.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01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2차	2015. 3. 26.	-	-	2015. 6. 30.	지원배제
102		〃	-	-	〃	〃
103		〃	-	-	〃	〃
104		〃	-	-	〃	〃
105		〃	-	-	〃	〃
106		〃	-	-	〃	〃
107		〃	-	-	〃	〃
108		〃	-	-	〃	〃
109		〃	-	-	〃	〃
110		〃	-	-	〃	〃
111		〃	-	-	〃	〃
112		〃	-	-	〃	〃
113		〃	-	-	〃	〃
114		〃	-	-	〃	〃
115		〃	-	-	〃	〃
116		〃	-	-	〃	〃
117		〃	-	-	〃	〃
118		〃	-	-	〃	〃
119		〃	-	-	〃	〃
120		〃	-	-	〃	〃
121		〃	-	-	〃	〃
122		〃	-	-	〃	〃
123		〃	-	-	〃	〃
124		〃	-	-	〃	〃
125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2차 (기획형)	〃	-	-	〃	〃
126		〃	-	-	〃	〃
127	기초공연예술 활성화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5. 3. 31.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28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29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0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1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2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3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4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5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6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7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8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39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0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1		〃	-	공연예술분야기획 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42	기초공연예술 활성화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5. 3. 31.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5. 6. 2.	지원배제
143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4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5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6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7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8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49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0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1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2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3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4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5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6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7		〃	-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	〃
158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 우수작품제작)	2015. 4. 11.	-	-	2015. 6. 29.	〃
159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민간단체지원	2015. 6. 3.	-	문화전문인력양성 및 배치사업	2015. 8. 5.	〃
160	기초공연예술 활성화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2015. 6. 17.	-	기초공연예술활성화	2015. 7. 3.	〃
161		〃	-	-	〃	〃
162		〃	-	-	〃	〃
163		〃	-	-	〃	〃
164		〃	-	-	〃	〃
165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대본공모)	2015. 7. 20.	▼▼	-	2015. 12. 4.	〃
166		〃	▼▼	-	〃	〃
167		〃	-	-	〃	〃
168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대본공모)	2015. 7. 31.	-	-	〃	〃
169		〃	-	-	〃	〃
170		〃	-	-	〃	〃
171	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사업	2015. 8. 5.	▼▼	-	2015. 10. 27.	지원배제
172		〃	-	-	〃	〃
173		〃	-	-	〃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74	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사업	〃	–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	〃
175		〃	–	–	〃	〃
176		〃	–	–	〃	〃
177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78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79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80		〃	–	–	〃	〃
181		〃	–	–	〃	〃
182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83		〃	–	–	〃	〃
184		〃	–	–	〃	〃
185		〃	–	–	〃	〃
186		〃	–	–	〃	〃
187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88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89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90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91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92		〃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	〃
193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회복지시설)	2015. 8. 21.	–	–	2015. 9. 22.	〃
194		〃	–	–	〃	〃
195		〃	–	–	〃	〃
196		〃	–	–	〃	〃
197		〃	–	–	〃	〃
198		〃	–	–	〃	〃
199		〃	–	–	〃	〃
200	소외계층 문화순회 (학교)	〃	–	–	〃	〃
201		〃	–	–	〃	〃
202		〃	–	–	〃	〃
203		〃	–	–	〃	〃
204	주목할 만한 작가상	2015. 10. 29.	–	주목할 만한 작가상	2016. 1. 26.	〃
205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06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07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08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09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0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1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2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3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4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5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216		〃	–	주목할 만한 작가상	〃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17	예술가창작 역량강화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1차)	2015. 11. 30.	-	예술가창작역량강화	2016. 2. 4.	지원배제
218		〃	-	예술가창작역량강화	〃	〃
219	한국예술 국제교류 (국제예술 교류지원-1차)	〃	-	-	〃	〃
220		〃	-	-	〃	〃
221		〃	-	-	〃	〃
222		〃	-	-	〃	〃
223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회복지시설)	2015. 12. 15.	-	-	2016. 2. 26.	〃
224		〃	-	-	〃	〃
225		〃	-	-	〃	〃
226	소외계층 문화순회 (농산어촌)	〃	-	-	〃	〃
227		〃		-	〃	〃
228	소외계층 문화순회 (임대주택)	〃	-	-	〃	〃
229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2015. 12. 17.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2016. 1. 19.	〃
230		〃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
231		〃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
232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2015. 12. 22.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2016. 2. 25.	〃
233		〃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	〃
234		〃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	〃
235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2016. 1. 6.	-	-	2016. 2. 5.	〃
236		〃	-	-	〃	〃
237		〃	-	-	〃	〃
238		〃	-	-	〃	〃
239	공연예술 행사지원	2016. 1. 15.	-	-	2016. 2. 25.	〃
240		〃	-	-	〃	〃
241		〃	-	-	〃	〃
242		〃	-	-	〃	〃
243		〃	-	-	〃	〃
244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지원	2016. 1. 29.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2016. 3. 31.	〃
245		〃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
246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시범공연-일반)	〃	-	-	〃	〃
247		〃	-	-	〃	〃
248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시범공연-어린이청소년)	2016. 2. 19.	-	-	2016. 5. 4.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49	시각예술 창작산실 (전시지원)	2016. 2. 25.	-	-	2016. 5. 9.	지원배제
250		〃	-	-	〃	〃
251		〃	-	-	〃	〃
252		〃	-	-	〃	〃
253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2016. 3. 4.	-	-	〃	〃
254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	-	-	2016. 5. 4.	〃
255		〃	-	-	〃	〃
256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 역량강화 지원	〃	-	-	〃	〃
257		〃	-	-	〃	〃
258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	-	-	〃	〃
259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우수재공연-일반 및 어린이청소년)	2016. 3. 18.	-	-	2016. 5. 24.	〃
260		〃	-	-	〃	〃
261		〃	-	-	〃	〃
262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우수재공연)	〃	-	-	〃	〃
263		〃	-	-	〃	〃
264	한국예술 국제교류 (국제예술 교류지원-2차)	2016. 3. 31.	-	-	2016. 6. 7.	〃
265		〃	-	-	〃	〃
266		〃	-	-	〃	〃
267		〃	-	-	〃	〃
268		〃	-	-	〃	〃
269		〃	-	-	〃	〃
270		〃	-	-	〃	〃
271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모집	2016. 4. 21.	-	-	2016. 5. 26.	〃
272	한-영 리서치지원	2016. 5. 23.	-	-	2016. 6. 27.	〃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73	공연예술스태프(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6. 5. 24.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6. 6. 29.	지원배제
274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5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6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7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8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79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0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1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2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3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4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5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6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7		〃	-	공연기획·경영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8	공연예술스태프(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89		〃	-	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90		〃	-	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91		〃	-	무대기술스태프 전문인력 지원사업	〃	〃
292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음악,오페라-오작교프로젝트)	2016. 7. 22.	-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2016. 9. 21.	〃
293		〃	-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	〃
294		〃	-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	〃
295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2016. 8. 31.	-	-	2016. 10. 5.	〃
296	인문정신 온라인서비스	-	-	인문정신온라인서비스	2015. 10. 8.	〃
297		-	-	인문정신온라인서비스	〃	〃
298	아트원씨어터 수시 대관	-	-	-	2016. 8. 2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재구성

[별표 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연번	공모사업명	공모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	방방곡곡 문화공감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2015. 1. 6.	ㅁㅁ (EL)	-	2015. 2. 3.	지원 배제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료 재구성

[별표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

연번	시행 기관명	공모 사업명	공모 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2014. 5. 8.	지원(선정) 배제
2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3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2015. 12. 2.	〃
4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5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6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7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8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9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10			-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11			2015. 4. 3.	-	장한 어머니상	2015. 5. 7.	〃
12			〃	-	장한 어머니상	〃	〃
13		장한어머니상	〃	-	장한 어머니상	〃	〃
14			〃	-	장한 어머니상	〃	〃
15			〃	-	장한 어머니상	〃	〃
16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포상	2015. 6. 26.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포상	2015. 11. 10.	〃
17			〃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포상	〃	〃
18	문화체육 관광부	한글유공표창	2015. 7. 24.	-	한글유공표창	2015. 10. 9.	〃
19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2015. 12. 8.	-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2015. 12. 28.	〃
20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	-	-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	2016. 3. 22.	〃
21		제35회 세종문화상 포상	2016. 2. 26.	-	제35회 세종문화상 포상	2016. 5. 12.	〃
22			2016. 6. 1.	-	시시콜콜 공모사업	2016. 7. 8.	〃
23		시시콜콜 공모사업	〃	-	시시콜콜 공모사업	〃	〃
24			〃	-	시시콜콜 공모사업	〃	〃
25			〃	-	시시콜콜 공모사업	〃	〃
26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2016. 3. 4.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2016. 3. 23.	지원(선정) 배제
27		전통풍물활성화사업	2016. 4. 15.	-	전통풍물활성화사업	2016. 5. 20.	〃
28			〃	-	전통풍물활성화사업	〃	〃

연번	시행 기관명	공모 사업명	공모 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9		세계무형유산 활용 공연지원	2016. 5. 20.	-	세계무형유산 활용 공연지원	2016. 7. 4.	〃
30	-	운영자문위원	-	-	운영자문위원	2015. 8. 10.	〃
31			-	-	운영자문위원	〃	〃
32	-	해외교류기획 사업	-	-	해외교류기획사업	2016. 7. 26.	〃
33			-	-	해외교류기획사업	〃	〃
34	-	장애인문화예술대상	2015. 8. 21.	-	장애인문화예술대상	2015년 10월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별표 1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당 배제 명세

연번	사업연도	지원배제 확정일시	지원사업명	지원배제대상	지원배제내용
1	2014	2014. 8. 25.	전용관 운영지원사업	ㅅ	지원금 지원배제
2		2014. 11. 10.		-	"ㅋ"에서의 영화 'ㅇ' 상영요청 거부
3	2015	2015. 4. 29.	전용관 운영지원사업	ㅊ	지원금 지원배제
4				ㅈ	
5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부당 선정배제 명세

연번	사업연도	분야	장르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2014	문학	소설	-	-	-
2				-	-	-
3			시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ㅍ	-	-
10	2015	문학	소설	-	-	-
11				-	-	-
12			시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수필	-	-	-
18			교양	-	-	-
19		교양	철학/심리학/윤리학	-	-	-
20				-	-	-
21			사회과학	-	-	-
22				-	-	-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 재구성